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 생략 14.~15.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15.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제 10 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수익증권 15. Class C-P2e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 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2. Class C-P2e 수익증권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 익증권의 발 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1.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1. 현행과 같음 12. Class C-P2e 수익증권
제 39 조(보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		<p>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생략</p>	<p>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p> <p>12. Class C-P2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20</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14</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 투자기구의 명 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13.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현행과 같음 13. Class C-Pe 수익증권: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2.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2. 현행과 같음 13. Class C-Pe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2.(생략)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2. 현행과 같음 13. Class C-Pe 수익증권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4.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 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Class C-P,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Class C-P, S-P, <u>C-Pe</u>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 생략 16.~17.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17.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5. 생략 16.~17.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수익증권 17. Class C-P2e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5. 생략 16.~17. (신설)</p>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p>17. Class C-P2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Class C-P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 생략 14.~15.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15.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수익증권 15. Class C-P2e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 생략 14.~15. (신설)</p>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p>15. Class C-P2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Class C-P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 생략 16.~17.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17.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5. 생략 16.~17.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수익증권 17. Class C-P2e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5. 생략 16.~17. (신설)</p>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5. 현행과 같음 16. Class C-P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p>17. Class C-P2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Class C-P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C-Pe, Class C-P2e)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 생략 14.~15.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15. Class C-P2e :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수익증권 15. Class C-P2e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 생략 14.~15. (신설)</p>	<p>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p>15. Class C-P2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Class C-P, Class C-P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3. 생략 14.~15. (신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p>15. Class C-P2e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클래스 추가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Class C-P, Class C-P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